

이 간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289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거창군 고시 제2018-74호(2018.06.21.)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 2-289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.

2018. 11. 22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개요

종류	명 칭	위 치		시 행 규 모						시 행 구 간	최 초 결정일	사업기간
		읍·면	리	구분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		
군 계획 시설	거창 창포원 진입도로 개설공사	남상	월평	소로	2	289	313	8	14,287	남상면 월평리 2203번지 ~ 2262-2번지	거창군고시 제74호 (2018.6.21.)	2018.11. ~ 2019.12.31.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거창군수(건설과장)
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 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 예정일 : 2019. 12. 31.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

5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및 건설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 및 건설과(☎055-940-355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47,484.6	14,287					
1	남상면 월평리	2198	도	2,474	133		경상남도			
2	남상면 월평리	2197	도	2,368	270		경상남도			
3	남상면 월평리	2196-1	도	482	14		경상남도			
4	남상면 월평리	2362	구	2,839	234		농림축산식품부			
5	남상면 월평리	2202	도	2,007	377		경상남도			
6	남상면 월평리	2203	도	1,844	1,343		경상남도			
7	남상면 월평리	2204-1	도	640	492		경상남도			
8	남상면 월평리	2204-2	답	207	143	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로 98 (포일동)	한국농어촌공사			
9	남상면 월평리	2204	답	1,946.5	1,523	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-31 베이타운 102-902	김 정 연			
10	남상면 월평리	2205	답	1,202.4	335	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-31 베이타운 102	김 정 연			
11	남상면 월평리	2206	답	1,917.7	614	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13 거창군 거창읍 상동 76	김 광 식 김 영 모			
12	남상면 월평리	2364	도	970	263		농림축산식품부			
13	남상면 월평리	2255	도	2,509	904		경상남도			
14	남상면 월평리	2253-1	도	815	725		경상남도			
15	남상면 월평리	2253-2	답	254	254	경기도 의왕시 안양관교 로98 (포일동)	한국농어촌공사			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16	남상면 월평리	2253	답	3,040.6	2,818	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 순환로 63길8(신월동)	함 판 석			
17	남상면 월평리	2250	답	540.3	288	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13 거창군 거창읍 상동 76	김 광 식 김 영 모			
18	남상면 월평리	2251	답	112.3	34	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71	염 수 근			
19	남상면 월평리	2252	답	1,330.7	40	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076	염 학 수			
20	남상면 월평리	2366	구	2,335	54		농림축산식품부			
21	남상면 월평리	2261-1	도	1,225	236		경상남도			
22	남상면 월평리	2261-2	답	253	253		경상남도			
23	남상면 월평리	2261	답	573	573		경상남도			
24	남상면 월평리	2263	답	1,444.2	273		거 창 군			
25	남상면 월평리	2262	답	1,609.9	1,445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상월평길 51-1	염 학 수			
26	남상면 월평리	2261-3	도	34	27		경상남도			
27	남상면 월평리	2262-1	도	51	38		경상남도			
28	남상면 월평리	2262-2	답	37	37	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98 (포일동)	한국농어촌공사			
29	남상면 월평리	2368	구	1,283	9		농림축산식품부			
30	남상면 월평리	2295-1	도	1,103	58		경상남도			
31	남상면 월평리	2295	답	265	239		경상남도			
32	남상면 월평리	2288	답	9772	241		거창군			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1. 21.

거창군수

- 부여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23-9 등 7건
- 폐지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길 5 등 8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6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
2. 개정이유
 -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및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- 조례 문구 수정(안 제23조제4항)
 -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마련(안 제24조제3항)
 - 근로자 전입정착금 조항 신설(안 제24조의2)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1. 16. ~ 2018. 12. 6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
- 주 소 : (우 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기업지원과

- 전화번호 : 055)940-3377

- FAX : 055)940-3679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

군수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.

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근로자 전입정착금)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(이하“전입정착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관내 공장등록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

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간 전출하여 재 전입할 경우
2. 적용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전출 후 재 전입할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

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,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 ①~③ (생 략) ④ <u>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</u></p>	<p>제23조(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군수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.</u></p>
<p>제24조(근로자 주거지원) ①~②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24조(근로자 주거지원) ①~② ③ <u>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24조의2(근로자 전입정착금) ① <u>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(이하“전입정착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<u>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관내 공장등록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</u> ③ <u>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간 전출하여 재 전입할 경우</u> 2. <u>적용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 하고 2년간 전출 후 재 전입할 경우</u> 3. <u>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</u> ④ <u>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,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례명 : 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- ③ 삭제 <2013. 7. 16.>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6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」

2. 제안이유

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등 개정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조항 신설(안 제7조)
 - 별지서식 제6호, 제7호 서식 신설

4. 개정규칙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1. 16. ~ 2018. 12. 6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-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8년 12월 6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 - 주 소 : (우 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기업지원과
 - 전화번호 : 055)940-3377
 - FAX : 055)940-3679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)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.

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 이내(단,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)
2.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제7조(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) ①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자 전입정착금(이하 “전입정착금”이라 한다)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
2.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

② 전입정착금의 지원금액,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지원금액은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이며, 3년간 지원할 수 있다
2. 전입정착금 지원의 적용기준일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.

③ 전입정착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신 설>	<p>제6조(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)</p> <p>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.</p> <p>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 이내 (단,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)</p> <p>2.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</p>		
	<신 설>	<p>제7조(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)</p> <p>①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자 전입정착금(이하 “전입정착금”이라 한다)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</p> <p>2.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전입정착금의 지원금액,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지원금액은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이며, 3년간 지원할 수 있다</p> <p>2. 전입정착금 지원의 적용기준일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.</p> <p>③ 전입정착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	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규칙명 : 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건	비 고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에 따른 열람 공고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1. 19.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51	20	주간선 도 로	505	중2-63	중1-52	일반 도로	승강기 농공단지	거고60호 ('11.8.25)	
변경	중로	1	51	20	주간선 도 로	502	중1-56	중1-52	일반 도로	승강기 농공단지	-	선형변 경 노선축 소
기정	중로	2	63	15	주간선 도 로	2,220	중2-17	중2-31	일반 도로	남상 무촌	거고43호 ('08.9.25)	지1084
변경	중로	1	56	22	주간선 도 로	1,300	중2-17	중로2-6 3	일반 도로	남상 무촌	-	노선분 리 폭원확 장
변경	중로	2	63	15	주간선 도 로	920	중로1-5 6	중2-31	일반 도로	남상 무촌	-	노선축 소

나.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51	중로1-5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-폭원:20m -연장:505m→502m(감3m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승강기농공단지 진입로의 기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, 중로1-56호선의 노폭확장에 따라 노선을 축소 변경함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63	중로1-5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노선분리 및 폭원확장 -폭원:15m→22m -연장:1,300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승강기농공단지의 접근성 개선 및 거창 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을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폭원을 확장 변경함
	중로2-6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노선축소 -폭원:15m -연장:2,220m→920m(감1,300m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일부 구간 노폭 확장에 따라 잔여 노선을 분리 변경함

2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3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
4. 의견 제출방법 :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
5. 관계도면 : 실음 생략(열람장소 비치)
6.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92)로 문의바랍니다.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-21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경상남도 고시 제1985-211호(1985. 12. 28)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 소로3-2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90조,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11. 20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시행개요

구분	종류	사업명	위치		시행규모						시행위치		최초결정일	사업기간
			읍	리	등급	류별	번호	연장(m)	폭(m)	면적(m ²)	시점	종점		
당초	도시계획시설	창남초등학교 주변 (소로3-21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	거창	대평	소로	3	21	213.0	6.0	1,282	거창읍 대평리 1452-23	거창읍 대평리 1485-140	경상남도고시 1985-211호 (1985.12.28)	2017. 05~ 2018. 12. 31.
변경	도시계획시설	창남초등학교 주변 (소로3-21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	거창	대평	소로	3	21	213.0	6.0	1,282	거창읍 대평리 1452-23	거창읍 대평리 1485-140	경상남도고시 1985-211호 (1985.12.28)	2017. 05. ~ 2019. 12. 31.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
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설계도 : 기재생략(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비치)

4. 열람 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5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7,949	1,282					
합계	-	-	-	6,262	1,277					
1	거창읍 대평리	1452-23	구	63	61		국(농림수산부)			당초
1	거창읍 대평리	1452-23	구	63	61		국(농림수산부)			변경
2	"	1473-3	도	66	66		국(국토교통부)			
2	"	1473-3	도	66	66		국(국토교통부)			
3	"	1232-39	종	137	137	마산시 완월동 *	재단법인*재단			
3	"	1232-39	종	137	137		거창군			
4	"	1232-38	도	42	42	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*	이 * 식			
4	"	1232-38	도	42	42		거창군			
5	"	1232-1	대	225	36	거창읍 대평리 *	이 * 공			
5	"	1232-42	대	34	34		거창군			
6	"	1231-4	대	93	15	남상면 둔동리 *	최성영			
6	"	1231-13	대	15	15		거창군			
7	"	1227	대	46	31	거창읍 대평리 *	김 * 희			
7	"	1227	대	46	31	거창읍 대평리 *	김 * 희			
8	"	1170-1	대	294	65	거창읍 대평리 *	이 * 휘			
8	"	1170-3	대	69	69		거창군			
9	"	1163	대	288	99	거창읍 대평리 *	김 * 기			
9	"	1163	대	288	99	거창읍 대평리 *	김 * 기			
10	"	1485-163	대	75	39		거창군			
10	"	1485-163	대	75	39		거창군			
11	"	1485-96	도	53	4		국(국토교통부)			
11	"	1485-96	도	53	4		국(국토교통부)			
12	"	1234-5	학	73	73		경상남도(교육감)			
12	"	1234-5	학	73	73		거창군			
13	"	1473-2	대	112	6		거창군			
13	"	1473-2	대	112	6		거창군			
14	"	1233-3	학	185	185		경상남도(교육감)			
14	"	1233-3	학	185	185		거창군			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 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15	"	1233-1	대	433	49		경상남도(교육감)			
15	"	1233-4	대	44	44		거 창 군			
16	"	1231-7	대	264	66	거창읍 대평리 *	정 * 호			
16	"	1231-14	대	64	64		거 창 군			
17	"	1231-2	도	588	25	동동	신 * 재			미등기
17	"	1231-2	도	588	25	동동	신 * 재			미등기
18	"	1224	대	66	4	거창읍 창남4길 *	김 * 희			
18	"	1224	대	66	4	거창읍 창남4길 *	김 * 희			
19	"	1226	대	79	46	거창읍 대평리 *	백 * 범			
19	"	1226	대	79	46	거창읍 대평리 *	백 * 범			
20	"	1171	대	631	27	거창읍 대평리 *	정 * 자			
20	"	1171-1	대	27	27		거 창 군			
21	"	1473-14	도	2,709	87		국(국토교통부)			
21	"	1473-14	도	2,709	87		국(국토교통부)			
22	"	1485-43	대	69	50		국(기획재정부)			
22	"	1485-43	대	69	50		국(기획재정부)			
23	"	1485-164	도	293	9		국(국토교통부)			
23	"	1485-164	도	293	9		국(국토교통부)			
24	"	1485-40	대	1	1		국(기획재정부)			
24	"	1485-40	대	1	1		국(기획재정부)			
25	"	1485-140	도	1,064	59		국(기획재정부)			
25	"	1485-140	도	1,064	59		국(기획재정부)			

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
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(태양광발전)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1. 20.

거 창 군



1. 공 고 명 : 전기(태양광발전)사업 양수 인가 공고
2. 공고기간 : 2018. 11. 20. ~ 2018. 12. 07.
3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
4. 공고내용 : 전기(태양광발전)사업 양수인가 내역
가. (주)품광2호 태양광발전소 ⇒ 품광2호 태양광발전소

구분		양 도 인	양 수 인
태양광 발전사업 (거창군 제2017 -146호/ 경남 제2017 -374호)	발전소명	(주)품광2호 태양광발전소	품광2호 태양광발전소
	대 표 자	오 해 석	
	소 재 지	경남 거창군 위천면 덕거길 151	
	설치장소	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18-10, 946-1(토지 위)	
	설비용량	399.84kW(사업허가 용량)	
	허가일자	2017. 11. 01.	
	양수(예정)일	2018. 11. 20.	

5. 양수내용 : 양도인의 전기사업(태양광발전 사업허가)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. 끝.